

연구보안관리세칙 신규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6조(분류기준) ①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</p> <p>1. 보안과제: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,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과제</p> <p>2.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보안과제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2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3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가 추진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4. 국방,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</p> <p>5. 기타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④ 위원회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 중 별도의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중요 연구과제에 대해서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분류기준) ①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</p> <p>1. 보안과제: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, 기술적,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</p> <p>가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나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</p> <p>다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</p> <p>라. 「대외무역법」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</p> <p>마.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</p> <p>2. 현행과 동일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「국가정보원법」에 따른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I급비밀, II급비밀,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「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른 군사 I급비밀, 군사 II급비밀, 군사 III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삭제</p>	<p>* 보안등급 분류기준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</p> <p>* 제③항의 보안과제 분류기준을 제①항 1호의 '목'으로 이동</p> <p>③항: 보안업무규정 및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예외적 사항에 대한 규정 추가</p> <p>④항: 보안과제 분류기준 중에도 위원회가 보안과제를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 삭제</p>

